

행 정 안 전 부

시정요구

제 목 장기간 비별도 파견 및 직무대리 운용 부적정

기 관 명 전라남도, 목포시, 장흥군, 진도군, 신안군

내 용

「지방자치법」 제11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규정 제10조, 제14조, 별표2 및 별표3에 의하면 시·도 소속 3급 공무원은 실·국·본부장(시·군·구의 경우 4급)에, 4급 공무원은 담당관·과장(시·군·구의 경우 5급)에 상당하는 직위를 부여하여야 하며, 「지방공무원임용령」 등에 따라 정원에 부합하도록 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아울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4급 이상 공무원의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5급 이하는 시·도에서 승인)을 받아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라남도, 목포시, 장흥군, 진도군, 신안군의 경우 기관 내 중요 보직을 수행하여야 할 간부급 공무원을 장기간 별도정원(결원보충) 승인 없이 민간단체 등 외부기관에 파견하였고, 이에 따른 결원 직위는 차하급자를 직무대리로 지정해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다.

직무대리 제도는 상위직위의 직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본래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석 직위의 직무를 병행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인사상 임용행위와는 달라 전보 또는 승진임용으로의 운영이 제한되는 데도 상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차하급자를 대상으로 해당 국·과장 직위에 승진 개념으로 인사발령 및 직무를 수행케 하는 등 부적정 인력 운영을 장기간 지속하였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직급별 정원과 현원이 일치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차하급자의 정원을 이용해 간부급 직위를 추가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정상화 계획 마련 등 조속한 시정이 요구된다. (위반사항 : 불임)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지사, 목포시장, 장흥군수, 진도군수, 신안군수께서는

간부급 공무원을 장기간 비별도 파견 후 결원 직위에 대한 지속적인 직무대리 운영을 지양하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및 정원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붙임】

< 장기간 비별도 파견 및 직무대리 운용 부적정 >

지자체	비별도 파견 현황			직무대리자 직급
	직급	파견기관(직위)	파견기간	
전남	4급	국제농업박람회(사무국장)	'16.8.2.~'22.1.12.	5급
	(2명)	F1대회조직위(부장)	'16.1.12.~'22.1.12.	5급
	5급 (11명)	한국농어촌공사 (농촌개발 지역협력관)	'15.1.13.~'22.1.31.	6급
		한국농어촌공사 (어촌개발 지역협력관)	'19.8.21.~'21.7.31.	6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역협력관)	'15.1.13.~'22.1.31.	6급
		전남개발공사 (본부장, 사업단장, 협력관)	'11.1.17.~'22.1.12.	6급
		전남테크노파크(실장)	'11.1.17.~'22.1.12.	6급
		전남생물산업진흥원(실장)	'14.1.13.~'22.1.31.	6급
		전남환경산업진흥원(사무국장)	'13.1.14.~'21.8.13.	6급
		한국학호남진흥원(사무국장)	'19.7.22.~'21.6.30.	6급
		전남문화관광재단(사무처장)	'18.1.22.~'21.7.31.	6급
		국회사무처(지역협력관)	'18.7.21.~'21.7.9.	6급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사무국장)	'20.1.9.~'22.1.12.	6급
목포	5급	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20.7.1.~'22.1.5.	6급
장흥	5급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원장)	'17.7.1.~'18.6.30. '19.7.1.~'19.12.31. '21.1.1.~'21.6.30.	6급
진도	5급	전남 중앙협력본부 세종사무소 (협력관)	'21.1.11.~'21.12.31.	6급
신안	5급	신안문화원(협력관)	'19.4.26.~'21.12.31.	6급
	(3명)	목포대 도서관문화연구원(협력관)	'11.12.22.~'21.6.31.	6급
		(재)신안군복지재단(요양원장)	'18.8.21.~'21.12.31.	6급

※ 실무인력(주무관급 : 시·도 6급 이하, 시·군·구 7급 이하) 제외

행 정 안 전 부

시정요구

제 목 별정직과 일반직 복수직렬 책정 부적정

기 관 명 전라남도

내 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별정직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책정할 수 있고, 동 규정 제22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을 복수로 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동 규정 및 다른 법령에서 일반직공무원을 갈음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직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그러나, 전라남도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한 예외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서관 인력에 대하여 일반직과 별정직을 복수로 부여하는 등 정원책정의 일반기준을 위반하였다.

< 별정직·일반직 복수직렬 책정 부적정 >

지자체명	부서명	직급	담당사무
전라남도	총무과	행정·별정4급	• 지사 비서실 운영 총괄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지사께서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렬 정원을 정원책정의 일반기준 등 법령에 부합토록 조정하여 주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및 정원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행 정 안 전 부

시정요구

제 목 간부급(5급 이상) 정·현원 직렬 불일치

기 관 명 전라남도, 목포시, 순천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화순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함평군, 영광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내 용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은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에서는 정원에 부합하게 현원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일 현재 전라남도 및 산하 시·군의 5급 이상 직급별 정·현원을 확인한 결과, 상기 법령에 부합하지 않게 정원과 현원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되었는바, 해당 기관에서는 기능에 부합토록 정원을 재책정하거나 정원에 부합토록 현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개선이 요구된다. (위반사항 : 불임)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지사, 목포시장, 순천시장, 광양시장, 담양군수, 곡성군수, 화순군수, 강진군수, 해남군수, 영암군수, 함평군수, 영광군수, 완도군수, 진도군수, 신안군수께서는

정원과 현원이 부합하지 않는 직위에 대하여 정원 재책정 또는 정원에 부합하는 현원 배치 등 적절한 개선이 요구되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붙임】

< 5급 이상 정·현원 직렬 불일치 사례 >

지자체명	직위	정원	현원	비고
전라남도 목포시	교육운영과장	행정4급	기술4급	
	연동장	행정5급	건축5급	
	원산동장	행정5급	복지6급	
	동명동장	행정5급	시설5급	
	유달동장	행정·농업·해양수산5급	복지5급	
	하당동장	행정5급	간호5급	
	신흥동장	행정·시설5급	복지6급	
	삼향동장	행정·농업·녹지5급	공업5급	
	보건소장	기술4급	행정5급	
	환경보호과장	행정·보건·환경5급	공업5급	
	자원순환과장	행정·환경·시설5급	공업5급	
	자동차등록사무소장	행정·공업5급	시설5급	
순천시	서면장	행정·복지·녹지·보건5급	시설5급	
	덕연동장	행정·복지·보건·시설5급	의료기술5급	
광양시	옥룡면장	행정·복지·농업·녹지5급	방송통신5급	
	옥곡면장	행정·복지·농업·시설5급	보건5급	
	다압면장	행정·복지·농업·녹지5급	공업5급	
	보건소장	기술4급	행정4급	
	공원과장	행정·녹지·시설5급	농업5급	
	녹지과장	행정·녹지5급	농업5급	
담양군	수북면장	행정·복지·농업·보건5급	시설5급	
곡성군	오곡면장	행정·복지·녹지·환경5급	농업5급	
	민원실장	행정·기술4급, 행정·시설5급	공업5급	
	의회사무과장	행정5급	수의5급	
화순군	도곡면장	행정·공업·농업·시설5급	간호5급	
	전문위원	행정·농업·시설5급	복지5급	
강진군	마량면장	행정·해양수산·시설5급	복지5급	
	병영면장	행정·환경·시설5급	농업5급	
해남군	북일면장	행정·복지·공업·시설5급	농업5급	
	스포츠사업단장	행정·시설5급	농업5급	
영암군	서호면장	행정·복지·농업·시설5급	녹지5급	
함평군	엄다면장	행정·사회복지·농업5급	시설5급	
	축수산과장	행정·농업·수의·해양수산5급	시설5급	
영광군	홍농읍장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5급	복지5급	
	군남면장	행정·농업·보건·시설5급	복지5급	
	염산면장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5급	공업5급	
완도군	보길면장	행정·복지·해양수산·환경5급	보건5급	
진도군	세무회계과장	행정·시설5급	해양수산5급	
	의회사무과장	행정·농업·시설5급	해양수산5급	
	경영지원과장	농촌지도관	농업5급	
	시설관리사업소장	행정·공업·시설5급	환경5급	
신안군	세계유산과장	행정·해양수산·환경·시설5급	사서5급	

행 정 안 전 부

시정요구

제 목 소방관서 설치 부적정

기 관 명 전라남도

내 용

지방자치단체는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 소방안전교육·홍보,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소방기관 설치계획을 「소방기본법」 제8조,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소방력 보강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소방기본법」 제3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제9조,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또는 규칙으로 소방기관을 설치하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및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방기관의 소방력 등급에 따른 법정인력을 확보하여 신설 소방기관에 배치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전라남도에서는 함평군·장흥군·신안군·진도군 지역의 소방수요 등을 고려하여 소방서 설치 여부에 대해 면밀히 분석·검토 한 후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인력을 확보·배치하여야 하나 다른 소방기관의 현장활동인력을 이체하여 소방서를 신설하였으며, 특히 2019. 5. 30.자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하여 '장흥소방서'를 신설한 후 2020년에 장흥소방서 신설에 필요한 인력을 기준인건비 산정에 반영 요구하는 등 소방관서 설치에 필요한 인력확보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전라남도에서는 「소방기본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및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방관서 신설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 설치하는 등 소방관서 설치에 각별한 주의와 적절한 개선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지사께서는

소방 현장부서에 적정 소방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에 따라 법정 기준에 따른 인력을 확보한 후 배치하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행 정 안 전 부

시정요구

제 목 소방특별조사 및 화재조사 인력 운영 부적정

기 관 명 전라남도

내 용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기본법」,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소방기관의 소방력 등급별 현장 대응 및 예방요원을 배치하여 재난현장 안전점검, 화재조사 및 소방대상물의 특별조사 등 현장활동지원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정부에서는 충북 제천, 경남 밀양 화재와 같은 대형 참사를 방지하기 위해 2018년부터 다중이용시설 등 55만 4천개동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화재특별조사 및 화재안전정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소방특별조사 등에 필요한 인력을 기준인건비에 반영(2019년 22명, 2020년 22명, 2021년 22명)하여 전라남도에 통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전라남도는 목포소방서 등 14개 소방서에 소방특별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원을 배정하지 않고, 119안전센터 등의 인력을 지원받아 소방특별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소방서의 소방력 등급별 화재조사에 필요한 3교대 부족인력을 확보(2019년 15명, 2020년 14명, 2021년 14명)하였음에도 소방서에 정원을 배정하지 않아 1인이 화재조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현장지원인력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전라남도에서는 「소방기본법」,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등에 따라 소방 현장대응 및 예방부서에 적정 소방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소방인력 배치에 각별한 주의와 적절한 개선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지사께서는

소방 현장부서에 적정 소방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현장부족인력의 충원계획에 따른 정원배정 및 정원 범위 내에서의 인력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붙임】

< 소방서 소방특별조사요원 정원 및 현원 현황 >

연번	소방서	소방력 등급	소방특별조사 인력운영 현황				화재조사 인력운영 현황			
			소방력 기준	정원	현원	지원 인력	소방력 기준	정원	현원	지원 인력
계			146명	54명	86명	32명	120명	54명	54명	0
1	목포	1급	11명	3명	6명	3명	9명	3명	3명	
2	여수	1급	11명	4명	13명	9명	9명	3명	3명	
3	순천	2급	9명	5명	9명	4명	6명	3명	3명	
4	나주	2급	9명	5명	7명	2명	6명	3명	3명	
5	광양	1급	11명	4명	6명	2명	9명	3명	3명	
6	담양	3급	7명	4명	5명	1명	6명	3명	3명	
7	보성	3급	7명	2명	3명	1명	6명	3명	3명	
8	해남	3급	7명	2명	5명	3명	6명	3명	3명	
9	영암	3급	7명	3명	4명	1명	6명	3명	3명	
10	영광	3급	7명	3명	3명	-	6명	3명	3명	
11	화순	3급	7명	3명	3명	-	6명	3명	3명	
12	강진	3급	7명	3명	3명	-	6명	3명	3명	
13	무안	1급	11명	3명	3명	-	9명	3명	3명	
14	고흥	3급	7명	2명	4명	2명	6명	3명	3명	
15	함평	3급	7명	2명	3명	1명	6명	3명	3명	
16	장성	3급	7명	2명	3명	1명	6명	3명	3명	
17	장흥	3급	7명	2명	3명	1명	6명	3명	3명	
18	완도	3급	7명	2명	3명	1명	6명	3명	3명	

행 정 안 전 부

시정요구

제 목 소방공무원 현장부족인력 보강 부적정

기 관 명 전라남도

내 용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소방기본법」 제3조에 따라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 소방안전 교육·홍보,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른 정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6조에 따라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채용절차 진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전라남도에서는 2017년부터 소방활동에 필요한 인력을 기준인건비에 반영하여 정원을 확보한 후 소방공무원을 신규채용하여 현장에 배치하여 적정 소방력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소방공무원 채용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등 현장부족인력에 대한 보강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 전라남도 소방공무원 인력보강 현황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정원(A)	2,680명	3,012명	3,473명	4,006명
현원(B)	2,412명	2,739명	2,939명	3,352명
결원(A-B)	268명	273명	534명	654명
결원율	10%	9.1%	15.4%	16.3%

이에 전라남도에서는 「소방기본법」,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적정 소방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소방인력 보강에 각별한 주의와 적절한 개선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지사께서는

소방 현장부족인력의 충원계획에 따라 정원 배정뿐만 아니라 채용절차가 지체없이 이루어져 적정한 소방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행 정 안 전 부

개선권고

제 목 결원보충승인 업무처리 부적정

기 관 명 전라남도

내 용

행정안전부는 '08년 '시·도 결원보충(직무파견) 업무처리 안내' 지침을 통해 결원보충 승인의 원칙과 절차에 대한 지침을 수립하고 자치단체에 통보한 바 있다.

동 지침에 의하면 결원보충 사전협의 후 파견명령 및 결원보충 승인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래 파견자의 경우 사전협의 전에 파견명령을 하여 위 지침을 위반하였다.

< 사전협의 이전 파견 명령한 사례 >

파견기관	소속	직급	파견기간		사전협의일	파견명령일 (인사명령일)
			부터	까지		
세월호특조위	전남	행정7급	2019-08-16	2020-08-15	2019-08-19	2019-08-09
전남소방본부	화순군	시설6급)	2018-07-01	2019-12-31	2018-08-13	2018-07-01
전남문화관광재단	진도군	행정7급	2018-01-22	2018-12-31	2018-01-23	2018-01-22
전남문화관광재단	진도군	행정8급	2018-01-22	2018-12-31	2018-01-23	2018-01-22

또한, 동 지침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재단) 파견의 경우, 기관의 설립 초기에 행정기관이 관여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파견 및 결원보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라남도는 아래 표와 같이 설립 초기라고 보기 어려운 기관에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파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는바, 향후 결원보충승인 업무에 대한 주의 및 개선이 요구된다.

< 비영리법인(재단) 결원보충 부적정 사례 >

지자체명	재단(법인)명	설립일	최초파견일	파견 및 결원보충 인원	비고
전라남도	(재)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15.4.27.	'15.7.31.	2명 (전남 5급 1, 6급 1)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지사께서는

결원보충 승인 업무처리 절차 준수 및 비영리법인(재단) 등 외부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파견을 지양하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권고)

행 정 안 전 부

시정요구

제 목 전라남도 및 관할 시·군 소속 위원회 운영 부적정

기 관 명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내 용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15.9월)」 및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16~‘20년)을 통해 개최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인 위원회에 대한 정비방안을 통보한 바 있다.

이는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으로 세부 정비방안으로는 위원회 기능 및 필요성을 자체 검토 후 실효성·안전 특성 등에 따라 위원회 폐지, 협의체 전환 등을 실시(조례 등 근거규정 개정·폐지 포함)할 것을 안내하였다.

【 위원회 정비 기준 】

1. 폐지 : 목적 달성 등 존치 필요성이 소멸된 위원회
2. 통폐합 : 동일 법령 또는 동일 부처 소관으로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3. 존속기한 설정 : 영구 존속사유가 없는 경우 존속기한 명시(5년 이내)
4. 협의체 전환 : 민간위원 참여 필요성이 적은 내부 행정에 관한 심의 위원회
5. 비상설화 : 안전 발생 빈도가 적은 경우

* 사실상 비상설 운영하는 경우(위원 미구성 포함)에도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비상설 운영 명시 필요
※ 조문(예시) : ② 위원회는 안전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후 자동해산한다.

이와 관련하여 전라남도 및 산하 시·군에 대한 위원회 운영현황을 점검한 결과, 법령상 임의 설치가 가능하거나 조례 등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는 위원회 중 최근 3년간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의 경우, 존속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기와 같이 정비하여야 하나, 일부 위원회가 그대로 존치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 (위반사항 : 불임)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지사, 목포시장, 여수시장, 순천시장, 나주시장, 광양시장, 담양군수, 곡성군수, 구례군수, 고흥군수, 보성군수, 화순군수, 장흥군수, 강진군수, 해남군수, 영암군수, 무안군수, 함평군수, 영광군수, 장성군수, 완도군수, 진도군수, 신안군수께서는

상기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부합하도록 최근 3년간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폐지 등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붙임】

<조례 등에 근거를 두고 최근 3년간 미개최 위원회 현황>

지자체명	위원회명	설치근거		위원수
		법령 (임의)	조례 등	
전라남도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자문위원회	○		12
	시장 정비사업 시행구역 심의위원회 및 시장 분쟁조정 위원회	○		13
	천일염산업화추진위원회		○	14
	도로노선조정위원회		○	40
	지방대학및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협의회	○		19
	생물권보전지역관리위원회		○	15
	지하수관리위원회	○		14
목포시	면책심의위원회		○	5
	시민고충처리위원회	○		5
	설계자문위원회	○		100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	10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		11
	조각작품 심의위원회		○	0
	관광진흥위원회		○	21
	스포츠전지훈련유치위원회		○	7
	교통대책 위원회		○	9
	교통안전대책 위원회		○	11
	제안심사위원회		○	11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		10
	규제개혁위원회		○	26
	경로당운영위원회		○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위원회		○	12
	시사편찬위원회		○	0
	문화예술회관운영자문위원회		○	12
	의료관광자문위원회		○	12
	헌혈추진위원회	○		10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		20
	정책자문위원회		○	39
	목포자연사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		○	13
	갈등관리심의위원회		○	11
	시민소통위원회		○	33
	장의심의위원회 장의위원회		○	0
	소비자 정책위원회		○	0
	투자유치위원회		○	0
	지역상권발전심의위원회		○	15
	지식산업클러스터협의회		○	16

여수시	면책심의위원회		○	7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	16
	지역경제협의회		○	19
	유통분쟁조정위원회	○		11
	에너지위원회		○	12
	기업지원대책위원회		○	10
	공유촉진위원회		○	11
	여수시무장애도시실무위원회		○	20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심의위원회		○	5
	마리나자문위원회		○	14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	10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	20
	택시자문위원회		○	13
순천시	헬스투어협의회		○	10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	19
	안전관리자문단	○		18
	한옥위원회		○	7
	상권활성화협의회	○		13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		○	9
	향토유적위원회		○	11
나주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	20
	역사적인물선양사업위원회		○	0
	천연염색공방운영위원회		○	9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	10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	15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	19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	0
광양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	14
	의로운시민심사위원회		○	12
	어르신행복도시자문위원회		○	9
	체육진흥협의회	○		9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	21
	CCTV운영협의회	○		13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	16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	20
	공중목욕장운영위원회		○	9
	식생활교육위원회	○		18
	물재이용관리위원회		○	13
담양군	자체평가위원회	○		9
	교통안전정책심의회		○	9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	20
곡성군	군정평가위원회	○		8

곡성군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	10
	정보공개심의회	○		7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	14
	체육진흥협의위원회		○	14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		18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	13
구례군	향토문화유산심의위원회		○	9
	노인복지대책심의위원회		○	9
	구례군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		○	6
	공간정보위원회		○	8
	청년정책위원회		○	12
	인구정책위원회		○	15
	친환경농업육성발전위원회		○	15
	산수유 보호·육성 관리위원회		○	13
	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위원회		○	12
고흥군	규제개혁위원회		○	12
	기록물평가심의회	○		0
	보안심사위원회	○		23
	농업발전을위한민관협의회		○	23
	유자육성위원회		○	15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	9
	투자유치심의위원회	○		11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	15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		15
	부실공사방지위원회		○	7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		○	8
보성군	감사위원회		○	7
	금고지정심의위원회		○	9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	17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	15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	4
	전남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운영위원회		○	8
	건설사업종합기획단		○	16
화순군	화순군남북교류 협력추진위원회		○	15
	읍면지편찬위원회		○	16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	12
	친환경도시농업위원회		○	8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	0
장흥군	기록물평가심의회		○	6
	정보화위원회		○	15
	교육환경개선위원회		○	1
	공간정보심의위원회		○	8

장흥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	5
	계약심의위원회		○	11
	천관문학관운영위원회		○	7
	자원봉사발전위원회		○	15
	노인복지관운영위원회		○	9
	노인일자리위원회		○	3
	물가대책위원회		○	16
	농산물산지유통센터운영위원회	○		14
	환경위원회		○	10
	장흥한우육성위원회		○	10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	9
강진군	노사민정위원회	○		15
	화물공영차고지운영위원회		○	7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	13
	평생학습추진위원회		○	9
	관광진흥협의회		○	11
해남군	청년정책위원회		○	16
	양성평등위원회	○		12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	6
	자율적내부통제위원회		○	10
	정보화위원회		○	7
	노사민정협의회	○		15
	물가대책위원회		○	9
영암군	월출산로프웨이설치추진위원회		○	30
	교통안전대책위원회	○		13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	13
	향토문화유산위원회		○	30
	체육진흥협의회		○	15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	12
	지방청소년위원회		○	14
	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지원심의위원회		○	7
	안전관리실무위원회		○	15
	지적재조사위원회	○		39
	청소년상담복지센터청소년안전망운영위원회		○	14
	한옥위원회		○	9
	후생복지운영협의회		○	13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		8
	유통분쟁조정위원회	○		11
무안군	투자유치위원회	○		7
	노사민정협의회	○		10
	통합관제센터운영위원회	○		12
	재해지도 작성 자문위원회		○	9

무안군	조생양파최저생산비지원운영위원회		○	15
함평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	13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	10
	함평천지한우육성위원회		○	10
	교육환경발전위원회		○	11
	노사민정협의회	○		13
	군립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		○	10
	물가대책심의회	○		0
영광군	적극행정면책위원회		○	5
	자율적내부통제위원회		○	9
	기록물평가심의회	○		5
	명문교육성위원회		○	0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		9
	노사민정위원회	○		12
	소상공인지원위원회		○	10
	여성농어업인정책심의위원회		○	9
	환경위원회		○	13
장성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	16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	12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		14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	8
	경관위원회	○		20
	청소년위원회		○	12
	노사민정협의회	○		13
	필암서원유물전시관운영위원회		○	10
완도군	인구정책위원회		○	20
	한옥위원회		○	7
	체육진흥협의회	○		13
	쇼핑몰위원회		○	7
진도군	진도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	10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	10
	공동위원회	○		17
	노사민정협의회		○	15
	물가대책위원회		○	15
	갯벌습지보호지역위원회		○	8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심의위원회		○	6
신안군	체납정리위원회		○	0
	보안심사위원회		○	5
	자체평가위원회	○		10
	규제개혁위원회		○	12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	○		15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	4